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3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송옥주・이병진・정성호

박 정・김성환・문정복

이수진 · 김재원 · 노종면

한정애 · 용혜인 · 박해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변상"을 "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를 "급식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하며,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 실비변상,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군대원의 손실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실비 <u>변상</u>) 예비군부대의	제11조(실비 <u>변상 등</u>) <u>①</u>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	
된 예비군대원에게는 <u>대통령령</u>	<u>급</u> 식과-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u></u> কী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u>할</u>	여야 하며, 동원 또는 훈련소집
<u>수 있다</u> .	된 예비군대원의 손실에 대하
	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급식, 실비변
	<u>상,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